##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1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조인철·장종태·정진욱

민형배 • 정준호 • 최형두

이재관·김 현·김 윤

전진숙 · 황정아 · 채현일

양부남 • 박균택 • 정동영

오세희 • 이후기 의원

(17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② (생 략)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③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u>.</u>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1
경우에는 <u>2024년 12월 31일</u> 까	<u>2028년 12월 31일</u>
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	2
는 경우에는 <u>2024년 12월 31</u>	<u>2028년 12월 31</u>
<u>일</u> 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u> 일</u>
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4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	

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u>2028년 12월 31일</u>
⑤ (현행과 같음)